

사회적기업 · 소셜벤처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천지역 사회연대경제 육성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아이엔유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력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사회연대경제 분야 (예비)창업기업 발굴, 육성, 사업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상생경영 실천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력기관은 상호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2026년 4월 28일~2029년 4월 27일)으로 한다.

제4조【협력분야】 협력기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공동으로 협력한다.

- ① (예비)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창업활동 지원
- ② (공공)판로지원 및 시장진출 프로그램 기획·운영
- ③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사업 운영
- ④ 기타 협력기관 상호 협의에 따른 전략적 협력

제5조【효력】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의 효력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6조【해지 및 변경】 협력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 하에 협약 종료 1개월 전 협약 당사자 간 별도 합의를 통해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연장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승계】 양 기관은 본 협약 체결 후 각 기관의 명칭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 발생 시 본 협약내용을 포괄 승계한다.

제8조【비밀유지】 협력기관은 상호 업무협조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 사전 협의한 사항 이외의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협력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4부의 협약서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4월 28일

